제438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저축은행 제도개선>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60호)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03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Ⅰ. 안철수의원안 ····· 1

Ⅱ. 김상훈의원안 ····· 2

Ⅲ. 검토의견 ····· 4

1. 개요 ····· 4

2. 의무여신비율 산정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 5

3.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독자 발행 허용 ····· 12

4. 업무규율체계 변경(고유·부대업무 → 고유·부수·겸영업무) ····· 14

Ⅰ. 안철수의원안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안철수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4. 7.

다. 회 부 일 : 2026. 4.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총액 중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이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목적과 영업 대상에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도 이를 추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Ⅱ. 김상훈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4. 24.

3. 회 부 일 : 2026. 4.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업무 규율체계 역시 명시된 업무와 '부대업무'로만 구분되어 있어, 고유·부수·겸영업무로 체계화된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정합성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 및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대상에 중견

기업을 포함하고, 건전성 요건 등을 갖춘 경우 독자적인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하며, 업무 규율체계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개편함으로써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개 요

□ 2010년 말 총 104개에 이르던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는 총 79개사만 영업 중이나, 그 자산[1] 규모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발표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2]에서 자산 건전성 악화가 반복되는 저축은행의 구조적 체질 개선, 은행(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포함) 등 다른 예금·대출 취급기관과의 경쟁 속에서 저축은행의 정체성 재정립, 중견기업 등에 대한 금융 공급 강화를 통한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계획을 밝힘.

□ 개정안들은 이와 같은 정부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① 저축은행의 의무여신비율 산정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② 전자지급수단의 독자 발행 허용, ③ 업무 규율체계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3]

---

1) 저축은행 자산/수
(2010년 말) 86.9조원/104개 → (2015년 말) 43.8조원/79개 → (2025. 6월 말) 118.8조원/79개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2026. 2.

3) ①은 두 개정안 공통사항으로 안철수의원안은 중견기업 외에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차이가 있음. ②, ③은 김상훈의원안의 내용임.

2. 의무여신비율 산정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 개정안들은 저축은행의 영업대상에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대상에도 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현 행	안철수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제1조(목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의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2. ~ 11. (현행과 같음)

현 행	안철수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업무) ① (생 략)	제11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업무) (생 략)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②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저축은행은 1972년 제도화 이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지원하는 지역·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유해 왔음.

□ 현행법은 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 도모'로 규정하고, 신용공여[4] 총액 중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일정비율(수도권 50%, 지방 4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5]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6],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4)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5)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구역 내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공여는 유지비율 산정 시 신용공여에서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나. 영업구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구역 외의 구역인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 (이하 생략)

6)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이하 생략)

[별표 1]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조제1항 관련)
1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그러나, 국가 경제규모 성장과 대형저축은행[7] 등장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저축은행의 주요 영업대상을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8]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들은 저축은행의 설립 목적을 확장해 서민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도 추가하는 한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시에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

---

7) 2025년 9월 기준 총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상호저축은행: 총 5개사(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2026. 2.,)

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이하 생략)

한 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적 위치에 있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연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의무여신비율은 저축은행이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인데, 개정안과 같이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한다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중견기업에 대출이 집중되어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한편, 안철수의원안은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을 별도로 정의하여 저축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9] 중 소기업을 영위하는

---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자 등[10]을 의미하는 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소상공인만 따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임.

<중소기업・중견기업 비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중소기업</th><th>중견기업</th></tr>
<tr><td colspan="2">기준조건</td><td>아래 5개 모두 충족</td><td rowspan="5">중소기업, 대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 영위 기업 등이 아닐 것</td></tr>
<tr><td rowspan="2">규모 기준</td><td>①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 이하
② 업종무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td></tr>
<tr><td rowspan="3">독립성 기준</td><td>③ 공시대상기업집단 미해당</td></tr>
<tr><td>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 소유하는 최다출자자가 아닐 것</td></tr>
<tr><td>⑤ 관계기업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td></tr>
<tr><td colspan="2">관련법령</td><td>중소기업기본법</td><td>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td></tr>
</table>

<소상공인・중소기업 비교>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3">중소기업</th></tr>
<tr><th colspan="2">소기업</th><th rowspan="2">중기업</th></tr>
<tr><th>소상공인</th><th></th></tr>
<tr><td>대상</td><td>소기업 中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미만</td><td>업종별 매출액 등 규모기준 이하</td><td>중소기업 中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td></tr>
<tr><td>관련법령</td><td>소상공인기본법</td><td colspan="2">중소기업기본법</td></tr>
</table>

10)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서민·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실물경제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독자 발행 허용

□ 개정안은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갖춘 저축은행의 경우 독자적으로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항제12호·제13호).

현 행	김상훈의원안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업무) ① ----------. 1. ~ 11. (현행과 같음) 12. ----------경우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3. ----------경우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현행법 제11조제1항제12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11]의 발행·관리·대금결제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이는 개별 저축은행이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경우 결제 인프라 및 거래자 보호[12]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중앙회를 통해 그 품질과 보안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그러나,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자체 전자지급수단 발행은 고객 편의 제고 및 저축은행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고, 현재 자금력을 갖춘 저축은행이 다수 있으므로, 독자적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저축은행에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1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업무규율체계 변경(고유·부대업무 → 고유·부수·겸영업무)

□ 개정안은 ① 현재 고유·부대업무로만 규정되어 있는 업무규율체계를 고유·부수·겸영업무 체계로 변경하고(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 신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부수업무의 경우 구분 회계처리하도록 하며(안 제11조의4 신설), ③ 무신고 부수·겸영업무 영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현 행	김상훈의원안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신 설>	제11조(업무) ① ----------. 16.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11조제1항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

현 행	김상훈의원안
	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부수업무(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예금자 등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3(겸영업무의 운영) 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

현 행	김상훈의원안
	령에서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상호저축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4(겸영업무·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상호저축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상호저축은행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현 행	김상훈의원안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신 설>	2의3.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상호저축은행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13]은 저축은행의 업무를 고유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부대업무(법 제11조제1항제16호)로만 구분하고, 부

13)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외국환(內·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대업무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업무와 부대업무 간 회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법[14]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부대업무가 아닌 업무를 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은행[15], 보험회사[16], 금융투자업자[17] 등은 이미 고유·부수·

---

14)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이하 생략)

[별표 1]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조제1항 관련)
17.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한 경우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6) 「보험업법」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겸영업무의 3단계 체계를 운영하며, 부수·겸영업무는 금융위원회 신고 또는 보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음.

또한, 회계 구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18]나 신용카드업자[19]의 경우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은행[20]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나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 은행업무와 구별해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며, 금융투자업자[21]는 회계처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이하 생략)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보험업법」 제11조의3(겸영업무·부수업무의 회계처리)** 보험회사가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다른 금융업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3(겸영업무·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0) **「은행법」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⑥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③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
2. 신탁업
3.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4.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

④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은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회계처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리 시에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리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업무 규율체계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개편하여 사업 유연성과 규제 정합성을 높이고, 겸영·부수업무 회계를 고유업무와 구분함으로써 투명성과 감독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개정안 제11조의3제2항제1호[22]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는 업무까지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참고로, 「보험업법」[23]은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

---

22) **김상훈의원안 제11조의3(겸영업무의 운영)** 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상호저축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23) **「보험업법」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

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둘째**, 무신고 부수·겸영업무에 대한 제재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개정안은 신고 없이 부수·겸영업무를 하거나 겸영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것인데, 이는 현행법 제40조[24]에서 업무 가능 범위 이탈에 대한 시정명령 등 불응자에 대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런데,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미신고 부수·겸영업무 수행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에는 무신고 부수업무 수행에 대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겸영 가능 업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유사 입법례 및 규제 형평성과 제재 실효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의 적정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4) **「상호저축은행법」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무신고·무보고 시 제재 수준>

법률	구성요건	제재 수준
은행법	무신고 부수업무 무신고 겸영업무	1억원 이하 과태료[25]
	부수업무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겸영업무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1억원 이하 과태료[26]
보험업법	무신고 부수업무 무신고 겸영업무 (겸영 가능범위 이탈 포함)	1억원 이하 과태료[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겸영업무 미보고 부수업무 미보고	1억원 이하 과태료[28]
여신전문 금융업법	무신고 부수업무	5천만원 이하 과태료[29]
	겸영 가능범위 이탈	3억원 이하 과징금[30]

□ **셋째**, 개정안은 구분 회계처리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권고적 의미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실효성 확보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25) **「은행법」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6) **「은행법」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27)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경우
1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40조제1항 후단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법」[31]은 부수·겸영업무 시에 그 고유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업무 규율체계 변경 등에는 동의하나, 구분 회계처리의 경우에는 전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개정 실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

31) **「여신전문금융업법」제46조의3(겸영업무·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가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라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3조(감독)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각각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하 생략)

[별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30의4. 제46조의3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